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6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0.

발 의 자 : 박용갑 · 이해식 · 조인철
정준호 · 박상혁 · 이연희
장철민 · 박희승 · 이정문
허영 · 김영환 · 최혁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·왕래하는 유치원, 초등학교,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,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이 드문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통행속도를 저속의 단일한 속도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체증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므로,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·해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,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·해제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며,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포함하여 조사·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4제1항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과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·새벽, 토요일·일요일,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휴일·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시간대에 따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다.

제12조의4제1항 중 “현황 등”을 “현황,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· 해제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다음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 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 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· 해제 및 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역</u> <u>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교통 전</u> <u>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다만, 어린이 보행자의 <u>통행량과 통상적인 학교체류시</u> <u>간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·새</u> <u>벽, 토요일·일요일, 「공휴일</u> <u>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휴일</u> <u>· 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</u> <u>시간대에 따라 자동차등과 노</u> <u>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다르게</u> <u>제한할 수 있다.</u>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의4(보호구역에 대한 실태	제12조의4(보호구역에 대한 실태

조사 등)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<u>현황 등</u>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② · ③ (생략)	조사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<u>현황, 교통사고 예방 효과</u> <u>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